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4. 19.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4월 10일
- 다. 상정일자 : 제87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2002. 4. 1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재 형

가. 제안이유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의 2)
-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1조)

$$\text{-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당해년도 휴직기간}(\text{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 일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2002. 3. 28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되고 2002. 4. 8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수혜 확대 등을 위해,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안 제14조의2에서는 조 제목을 “토요전일근무제”에서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휴무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안 제21조 제1항에서는 현행 제1항의 휴직일수와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안 제3항과 안 제4항으로 하며 안 제2항을 신설하여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현행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우리 구의 경우에는 동 개정조례안이 확정·시행되더라도 월드컵대회와 4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하여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는 2002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주5일 근무제 실시는 국장급 이상도 해당되는가?

○ 답변요지(김재형 총무과장) : 해당됨.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민원부서는 어느 부서인가?

○ 답변요지(김재형 총무과장) : 민원봉사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임.

○ 질의요지(유응봉 위원) : 사회복지과는 민원부서가 아닌가?

○ 답변요지(김재형 총무과장) : 민원부서는 아니지만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은 없도록 조치될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2.04.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의2)

나.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text{당해년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일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공무원법(2001. 1.29 법률 제6400호) 제59조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01.10.31 대통령령 제17399호) 제13조 및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 서울특별시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 시달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생략함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함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의 제목“(토요전일근무제)”를“(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동조제1항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전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전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한다.

제21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미만은 절삭한다

$$\text{○ 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당해년도 휴직기간}}{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일수}$$

제24조제5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으로 각각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기 준	
<p>제14조의2(토요일근무제) ①주민 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p>	<p>제14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p> <p>-----</p> <p>-----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p> <p>-----</p> <p>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p> <p>-----</p>
<p>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p> <p>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미만은 절삭한다</p> <p>○ 휴직자의 연가일수 =</p> $\frac{12\text{월-당해년도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당해년도 연가일수}$
<p>② ~ ③(생략)</p>	<p>③ ~ ④(현행 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음)</p>

제24조(특별휴가) ①~④(생략)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⑨(생략)

제24조(특별휴가) ①~④(현행과 같음)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

⑥~⑨(현행과 같음)